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강 동 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용어와 조례 상 용어를 일치시키고,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,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탄력적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, 자율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
- 본 조례안을 통해 다문화 교육현장의 혼란을 없애고,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과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,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